|  |
| --- |
| **정 관**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제 1 장 총칙** | |
| 제1조 | ( 상호 ) 당 회사는 주식회사 이그쉐어라 하며, 영문으로는 IGShare Co.,Ltd.라 표기한다. |
| 제2조 | ( 목적 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  1. 주차유도 시스템업  1. 주차관제 시스템업  1. 계측장비업  1. 의료장비업  1. 전자부품 도소매업  1. 통신 판매업  1.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.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.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 1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|
| 제3조 | ( 본점과 지점 )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. |
| 제4조 | ( 공고방법 ) 당 회사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에 게재한다.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제 2 장 주식(株式)과 주권(株券)** | |
| 제5조 | (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,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로 한다. |
| 제6조 | ( 1주의 금액 )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. |
| 제7조 | (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)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,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 |
| 제8조 | ( 주권의 종류 )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, 10주권,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. |
| 제9조 | ( 주권불소지 )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. |
| 제10조 | ( 주금납입의 지체 ) 회사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(遲滯株金) 1,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 (過怠金)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|
| 제11조 | ( 주식의 명의개서 )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|
| 제12조 | ( 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)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. |
| 제13조 | ( 주권의 재발행 ) ① 주식의 분할ㆍ병합,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|

|  |  |
| --- | --- |
| 제13조 |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|
| 제14조 | (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) ① 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. 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 |
| 제15조 | ( 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의 신고 ) 주주,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,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.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제 3 장 주주총회(株主總會)** | |
| 제16조 | ( 소집 )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. |
| 제17조 | ( 의장 )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. |
| 제18조 | ( 결의 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,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. |
| 제19조 | (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)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제 4 장 임원과 이사회** | |
| 제20조 | ( 이사와 감사의 수 )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,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. |
| 제21조 | ( 이사의 선임 )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.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| 제22조 | ( 감사의 선임 ) 당 회사의 감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|
| 제23조 | ( 이사 및 감사의 임기 )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. 다만,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.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 |
| 제24조 | ( 대표이사 )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. 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.  ③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 단, 제20조에 의하여 당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|

|  |  |
| --- | --- |
| 제24조 |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. |
| 제25조 | ( 업무진행 )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. 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|
| 제26조 | ( 임원의 보선 )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. 다만,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 |
| 제27조 | ( 감사의 직무 )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|
| 제28조 | ( 보수와 퇴직금 )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제 5 장 계산(計算)** | |
| 제29조 | ( 영업연도 )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| 제30조 | ( 재무제표,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) ①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1) 대차대조표  2) 손익계산서  3)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,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 |
| 제31조 | ( 이익금의 처분 )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  1) 이익준비금(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이상)  2) 별도적립금 약간  3) 주주배당금 약간  4) 임원상여금 약간  5) 후기 이월금 약간 |
| 제32조 | ( 이익배당 )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된다. |
| 제33조 | ( 최초의 영업연도 )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부칙** | |
| 제34조 | ( 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)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, 기타 법령에 의한다.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. |
| 제35조 | (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)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. |
| 제36조 | ( 시행일자 ) 이 정관은 2016 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|

|  |
| --- |
| 2016년 05월 25일 |

|  |
| --- |
| 주식회사 이그쉐어 |

|  |
| --- |
| 위와 같이 주식회사 이그쉐어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. |

|  |
| --- |
| (주소)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410(구로동) |

|  |
| --- |
| 발기인 : 엄민영 (730606-1079411) |

|  |
| --- |
| (주소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2길 60-30 106동 101호(신정동, 세양청마루아파트) |